

스포츠지도자를 위한

핸드볼 안전가이드라인

1st Edition



스포츠지도자를 위한

핸드볼

안전가이드라인

1st Edition



스포츠안전재단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핸드볼 안전가이드라인 (1st Edition)

발행일 | 2019년 12월 26일

발행처 | 스포츠안전재단

발행인 | 이사장 이기흥

감수 | 사무총장 김준수

기획편집 | 이준화, 손민기, 정한창

연구 및 개발자 | 책임연구원 백성수, 공동연구원 유상건, 한승진, 양구석, 은홍범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63 웅산빌딩 8층

교육사업팀 |

TEL : 02-421-7375

FAX : 0507-0336-9346

Email : smkgarnett@sports.or.kr

www.sportsafety.or.kr

제작협조 | 대한핸드볼협회

본 매뉴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스포츠지도자를 위한

핸드볼

안전가이드라인

1st Edition

CONTENTS

I. 일반원칙 3

- 1 안전가이드라인 개요 4
- 2 안전가이드라인 활용 5

II. 핸드볼 안전가이드라인 6

- 1 지도자의 안전계획 수립 7
- 2 훈련장소 13
- 3 훈련운영 14
- 4 응급의료, 화재, 치안, 위생 21
- 5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 28
- 6 안전고지 및 통제 33

III. 참고사항 37

- 1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 38
- 2 표준안전계획서 40

I. 일반 원칙

1 안전가이드라인 개요

개발 목적

- ✓ 본 가이드라인은 핸드볼 대회 및 훈련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상황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보다 안전한 스포츠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 대회와 훈련을 책임지는 스포츠행사 운영자와 스포츠지도자가 책임져야 하는 안전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각 담당자의 안전에 대한 직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개발 배경 및 필요성

- ✓ 우리나라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총괄하는 대한체육회 정회원단체(61개 종목) 일부는 안전관련 규정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 일부 종목은 안전관련 규정이 없거나 안전관련 안내는 있으나 ‘종목별 스포츠안전을 위한 예방,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지역 체육단체도 안전 관련 규정이 미흡하거나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합니다.

- ✓ 따라서, 대회를 운영하는 단체와 훈련을 주관하는 지도자는 사고예방 및 사고 대처 등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회 및 훈련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방법
- 안전인력의 선발, 배치, 교육, 활용과 시설/장소 등의 안전 점검을 위한 내용
- 위급상황발생시 대처방법 등

- ✓ 한편 핸드볼 종목을 생활체육으로 즐기거나 전문선수로 활동하는 사람 중 “부상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그 사례를 조사해보면 ‘심한 부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6%, ‘보통 정도의 부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3%, ‘약간의 부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¹⁾.
- ✓ 이처럼, 전문체육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분야의 대회 및 훈련 등에 참여하는 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핸드볼에 특화된 안전관리 가이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2019, 스포츠안전재단)

2 안전가이드라인 활용

행사 형태(대회/훈련)의 구분

- ✓ 본 가이드라인은 다수의 팀이 참가하는 대회와 지도자가 지도하는 훈련으로 구분하여 대회용(운영자 측면)과 훈련용(지도자 측면)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니 각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활용합니다.

- 대회 : 대회규정에 의거하여 대회에 출전한 다수의 팀(개인)이 심판의 진행 하에 운영되는 공식 경기를 통해 승부를 겨루는 경쟁적 스포츠활동
- 훈련 : 개인 또는 팀이 각 팀의 경기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체활동(체력훈련, 기술훈련, 멘탈훈련, 전술훈련, 실전훈련, 친선경기 등)

구분	대회	훈련	비고
규정	대회규정	지침 등	
주요인력	운영자, 참여자, 관계자 등	지도자, 선수 등	대회규정
장소	규격화된 경기장(시설), 외부장소(바다, 도로, 산 등)	일반 경기장(시설) 또는 외부시설 등	대회규정
경기/경기 장비	필수	선택적(훈련 시 경기 가능)	대회규정
주요책임자	주최자, 운영자	지도자	
통제	강함(장소, 시설 이용 등 제한)	약함	대회규정
보상	주최자 보험 등	개인/팀(단체) 보험	

〈표 1〉 대회와 훈련의 구분

행사 특성 및 규모에 따른 활용법

- ✓ **(행사특성)** 전문체육/생활체육을 모두 고려하여 개발하였으며, 행사 규모 및 행사의 특성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사항을 상황에 맞게 채택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 ✓ **(행사규모)** 참여자(선수, 관람객, 관계자 등) 수를 기준으로 소/중/대 규모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으며, 그 규모에 따라 각종 안전 구비 요건 등이 달라지므로 행사 규모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구분	소형대회	중형대회	대형대회	비고
참여자수	500명 미만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1일 참여자 수

〈표 2〉 행사규모 구분

행사 장소에 따른 구분

- ✓ 본 가이드라인은 실내 및 실외 경기장에서 대회 및 훈련을 고려하였으므로 훈련장소(실내경기장, 실외 경기장, 야외)에 따라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선택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II. 핸드볼 안전가이드라인

1 지도자의 안전계획 수립

안전계획 수립 및 목표 설정

TIP

훈련계획 수립 시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목표 설정’을 해야 합니다.

- ✓ (안전계획 수립) 모든 훈련(전지훈련 포함)은 지도자, 선수 및 관계자 등 모든 참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 계획서 내에 안전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안전계획서

- 훈련장, 훈련운영, 시설 및 물자, 안전인력 배치 및 활용, 위급 상황발생 시 대처방안 등 안전사고 예방, 대비 및 대응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참고 ‘스포츠행사 안전계획서’ 참조



- ✓ (목표설정) 안전계획은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안전총괄책임자의 안전 철학과 주요 메시지를 담는 것도 좋습니다.

- 목표설정은 과거 동일 행사의 사고건수 및 부상자수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000년도 00월	0000년 00월	비고
사고00건 / 부상자00명	사고00건 / 부상자00명	사고00건 / 부상자00명 감소

최근 3년간 사고현황	0000년		0000년		0000년	
	사고건수	부상자수	사고건수	부상자수	사고건수	부상자수
	00	00	00	00	00	00
참여자규모	000,000명		000,000명		000,000명	

〈표 3〉 대회/훈련 안전목표

*사고 : 통원치료를 하는 수준의 사고에 한함.

1 지도자의 안전계획 수립

안전을 위한 조직체계

TIP

안전계획 수립 시 내부 및 외부 안전조직체계를 구성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 ✓ **(안전조직체계)** 안전계획 수립 시에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협회 내부 및 외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연락 및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전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내부 조직체계	훈련별로 선수, 지도자, 협회(사무국)의 보고/지시체계를 내부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외부 협력체계	병원, 경찰 등의 지원을 위해 외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표 4〉 안전조직체계

- ✓ **(비상연락처)** 조직체계 구성이 완료되면 참여자 및 관련기관의 연락처를 작성하고 조직 내부에 공유하도록 합니다.

업무구분	담당자	연락처	협력기관	전화번호	비고
훈련총괄					
훈련지도					
훈련장소					
응급의료			소방구급차	국번없이 119	인근주요 구급기관
			○○○응급센터		
			○○○응급센터		
			○○○응급센터		
위기대응			소방서	국번없이 119	화재
			경찰서	국번없이 112	범죄
			기상청	국번없이 131	기상
숙소					
식당					

〈표 5〉 훈련 시 안전조직체계 연락처

1 지도자의 안전계획 수립

✓ (선수단명부)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명부를 작성하여 공유하여 비상 시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소속	전화번호	비고
훈련총괄 훈련지원				대한핸드볼협회		
훈련지도						감독 코치
선수	번호	성명				
	00번					
	00번					부상
	00번					
	00번					제외
	00번					
	00번					재활
	00번					

〈표 6〉 훈련 참가 선수단명부(예시)

1 지도자의 안전계획 수립

위험관리계획

TIP

훈련기간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등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사전점검 등)** 훈련장 시설 및 장비와 관련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받았는지, 규정/규격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는지 등에 대한 사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구분	점검사항	점검시기	점검방법
훈련시설	소방, 전기, 상/하수도, 위생 점검	안전계획 수립 시	시설점검표 및 관계자 확인
훈련구역	경기관련 바닥, 장비, 설치물 등 훈련관련 설치물, 장소 등	훈련 및 연습경기 시작 전	현장점검
장비 등	팀/개인 장비의 안전성 등	훈련 및 연습경기 시작 전	현장점검

〈표 7〉 사전점검사항

- ✓ **(사고예방대책)** 훈련운영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구분	사고정도	사고 장소 및 세부내용	대처방안
주요사고 현황			

〈표 8〉 사고예방대책

- ✓ **(위기대응능력)** 훈련 시작 전 위기관리 및 대응 관련 사전 훈련을 실행하여 모든 선수단이 훈련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 및 대처능력을 배양할 것을 권장합니다.

교육	내용
위급상황에서의 행동절차 숙지	현장파악, 신고(연락)절차, 응급처치 및 도움(요청) 등
응급처치, 물품 등 확인	비상연락처, 소화기, 대피로, 자동제세동기(AED), 응급센터 등의 위치 확인 및 활용법 등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AED) 등
기타사항	재난상황에 따른 대피행동요령 등

〈표 9〉 선수단의 안전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교육(예시)

1 지도자의 안전계획 수립

점검 및 모니터링 등

TIP

훈련 안전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 ✓ **(안전점검)** 훈련의 안전점검은 자체점검 뿐만 아니라 스포츠안전재단 등 외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철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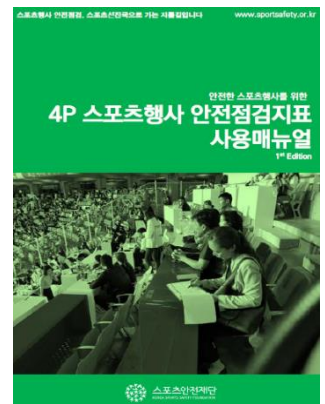
안전계획 수립, 안전인력구성 및 활용, 안전점검 및 현장모니터링, 경기장 및 경기운영 안전, 위급상황발생 시 대처방안 등

[대회 안전점검]

스포츠안전재단에서 개발한 ‘4P 스포츠행사 안전점검지표²⁾‘ 등을 활용하여 점검 가능

[훈련 안전점검]

본 스포츠 안전가이드라인 활용



- ✓ **(현장 모니터링)** 스포츠안전계획 수립 후에는 계획대로 훈련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부 항목별, 상황별 모니터링을 하며, 모니터링 결과는 훈련 계획 및 운영에 반영되어 조치 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 모니터링	① 안전계획 수립 시 계획 및 실행(훈련현장 포함) 등을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합니다.
	② 안전관련 모니터링은 상황, 시기, 장소 등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③ 모든 모니터링 결과는 사안에 따라 즉시 또는 향후 훈련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표 10〉 현장 모니터링

2) 점검지표는 기획부문(Plan), 인력부문(People), 장소부문(Place), 물자부문(Product) 80~100여개 지표로 구성

1 지도자의 안전계획 수립

문서기록 및 관리

TIP

안전 관련 문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문서기록) 안전과 관련된 안전방침, 회의록 등의 문서는 반드시 기록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훈련과 관련된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지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한 안전방침 또는 표준 안전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 회의록은 필수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안전사고 발생 시 주최자, 주관자의 안전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서로 기록해야 합니다.

✓ (문서관리) 안전관련 문서는 규정(재/개정포함), 지침, 계획, 승인 문서 등을 모두 포함하여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안전관련 문서를 관리하는 주관부서를 정해야 합니다.
- 문서대장을 작성하여 내/외부 수신, 발신 내용을 모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 안전관련 문서는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 (안전사고보고서)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개요, 사고경위,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전사고보고서 양식 예시〉

- 사고개요
 - 일 시 : 2020. 00. 00(○요일) 00:00
 - 장 소 : * 주소, 훈련장 및 관람석 등 세부장소 표기
 - 원인(경위) :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작성
 - 피해상황
 - 인명피해 : (사망) 명, (부상) 명
 - 재산피해 :
- 사고내용(경위)
- 조치사항(환자, 현장) : 환자 조치사항(환자상태 포함), 현장 조치사항
- 보험가입 여부 및 배상계획
- 향후 조치계획

2 훈련장소

훈련장소의 적정성

TIP

훈련장소는 안전성, 수용인원, 경기장,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합니다.

- ✓ (장소선정) 일반적으로 훈련에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분	고려사항
훈련장소	경기 시설 및 장소 상태, 선수단 수용이 가능한 적정규모의 시설 보유
숙식장소	훈련 장소와 인근지역 내 위생적인 식당, 숙소 이용가능 여부
접근성	훈련장소, 협력기관(소방서, 병원 등), 인근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안전/위생 등	훈련장 내 수도(식수포함), 소방, 전기, 가스 관련 안전성 등
편의시설	차량이동 및 주차, 비상구,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제공 * 샤워장, 탈의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 시설을 이용하되 이동, 위생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곳을 택해서 이용합니다.

〈표 11〉 장소적합도

TIP

훈련은 안전한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 시설 및 장비의 세부사항 등은
'스포츠행사 운영자를 위한 핸드볼 안전가이드라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훈련운영

안전점검

TIP

훈련 시, 선수단은 자체점검을 통해 부상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선수단) 지도자를 포함한 선수들은 훈련 참가 시 건강상태,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 안전 장비 착용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도자부터 선수, 의료진까지 모두 선수단의 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법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수단 안전점검	- 기상상태(야외훈련 시), 이동경로, 경기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훈련일정, 시간을 조정합니다.
	- 건강상태 점검: 근육, 관절, 심장 및 호흡기 등의 이상 유무, 부상부위, 영양섭취 및 컨디션, 음주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수의 컨디션을 고려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 훈련 전과 후, 본인 및 타인을 위해 스스로 경기장 바닥의 미끄러움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장려합니다(팀 내 문화로 정착).
	- 훈련 전, 준비운동 및 훈련 후, 정리운동은 반드시 실시합니다.
	- 안전장비(보호대, 압박슬리브 등)착용 필요시, 장비의 적절성을 점검합니다.
	- 선수본인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 부착되어 있는 비상대피 및 대피로 이용절차를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비상대피상황에서 만남의 장소(meeting point)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위기상황 및 부상 발생 시 대응방안 숙지여부를 점검합니다 (염좌, 파열, 뇌진탕, 심정지 등에 대한 대처법 등).
	- 재난(화재, 지진, 풍수해 등) 발생 시 행동요령의 숙지상태를 점검합니다.

〈표 12〉 선수단 안전점검

3

훈련운영

✓ (훈련장) 지도자 및 선수들은 선수단 안전을 위해 훈련장 상태(바닥, 네트, 심판대 등)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훈련장 안전 점검	- 옆질러진 물이나 이전 사용자의 땀이 코트 위에 있는지 표면을 확인합니다.
	- 사용하지 않는 도구들이 코트 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발목, 무릎 등 부상예방)
	- 코트를 확인하고,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 표면이 여전히 미끄럽다고 느껴지면 지도자가 확인할 때까지 훈련을 중지하거나 취소합니다.
	- Non-marking(바닥을 오염시키지 않는) 코트전용 신발을 합니다.
	- 훈련장 내 공 또는 비행체(flying object)의 사용은 어느 때라도 사용을 금지합니다.
	- 코트 인접 지역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충분한 run-off(이탈) 공간을 마련합니다.
	- 핸드볼 훈련 장비 외 다른 장비는 코트 위에 두는 것을 피합니다.
	- 훈련 관계자(선수, 운영진, 의료진 등)가 아닌 인원은 훈련지역 내에 없도록 합니다.
	- 훈련장비 등의 파손 시 대체, 이용금지, 보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훈련장 주변에 위험한 장애물 등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기타 부상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표 13〉 훈련장 안전점검

3 훈련운영

- ✓ **(미세먼지)** 실외 훈련 시 미세먼지 농도 및 지속시간에 따른 대응/조치를 해야 합니다
(단, 실내훈련 시에도 선수 이동, 야외 훈련 유무 등을 고려하여 대응할 것을 권장합니다).

훈련연기 및 취소³⁾

- [초등학교] 주의보 단계에서 훈련 취소
- [청소년 및 성인] 경보단계에서 훈련일 연기를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정보

- 환경부 에어코리아 (<https://www.airkorea.or.kr>)
⇒ 메인화면 좌측의 '초미세먼지 또는 미세먼지'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등급	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 (PM2.5)	운영지침
나쁨	81 - 150	36 - 75	당일 훈련시간 조정 훈련 연기 권장
매우나쁨	150 이상	76 이상	당일 훈련 연기 적극 권장

등급	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 (PM2.5)	운영지침
주의보	150µg/m ³ 지속	75µg/m ³ 지속	훈련 연기 권장
경보	300µg/m ³ 지속	150µg/m ³ 지속	훈련 연기 적극 권장

〈표 14〉 미세먼지 대응매뉴얼⁴⁾_스포츠안전재단

- ✓ **(폭염)** 실외 훈련은 폭염을 고려하여 훈련 진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훈련연기 및 취소

- 최고기온 33℃ 이상 폭염주의보가 발생된 경우, 외부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외부에서 진행되는 훈련은 연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구분	주의보	경보
폭염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표 15〉 폭염주의보/경보 기준⁵⁾

3) 대한축구협회(U리그) 미세먼지 적용기준
4) 스포츠안전재단 미세먼지·폭염 대응매뉴얼
5) '미세먼지·폭염 대응매뉴얼(스포츠안전재단)' 참조

3

훈련운영

✓ (오존) 실외 훈련은 ‘오존농도에 따른 행동권고’를 고려하여 훈련 진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오존 경보가 발령된 경우 야외대회는 제한하고 중대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야외훈련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구분	오존농도(ppm)	행동권고
주의보	0.12ppm이상	일사량이 많은 시간대(14~16시) 야외 대회 자제
경보	0.30ppm이상	일사량이 많은 시간대(14~16시) 야외 대회 제한 권장
중대경보	0.50ppm이상	야외 대회 금지 권장

〈표 16〉 오존 농도에 따른 행동권고(안)⁶⁾

- 오존 정보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web>)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위기대응) 선수단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시설, 응급장비, 대피로, 비상연락처 등을 고지하고 모든 선수단이 개별 연락처 등을 보유하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인쇄물 또는 휴대폰 사진 등으로 보관하도록 합니다.

✓ (사전교육) 모든 선수단은 비상사태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응급처치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심폐소생술

- 염좌, 파열, 뇌진탕 등에 대한 대처법 등

- 재난(화재, 지진, 풍수해 등) 발생 시 행동요령

6) ‘에어코리아(한국환경공단) 기준’ 참조

3 훈련운영

훈련지도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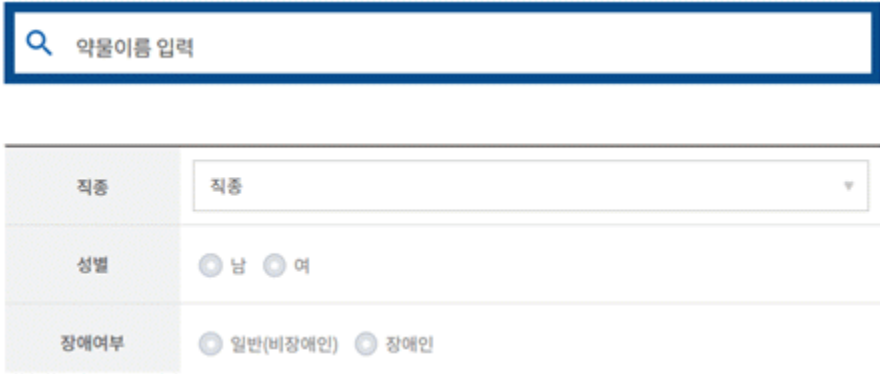
훈련프로그램은 안전사고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성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 ✓ **(훈련프로그램)** 선수들의 훈련프로그램은 준비운동, 본 운동, 정리운동 순으로 하며,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운동 강도, 시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구성/진행합니다.

훈련 프로그램	- 모든 훈련은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철저히 합니다.
	- 동적 운동과 정적 운동(스트레칭) 등을 병행하여 준비, 정리운동을 하여 부상 위험을 낮추고 피로회복 등이 잘 되도록 지도합니다.
	- 훈련 대상, 연령, 수준에 따라 적합한 훈련강도와 시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훈련을 지도해야 합니다.
	- 선수들 간 체력, 경기력 등의 수준차이가 현저히 나는 경우, 각 선수의 수준에 맞는 목표를 제시하여 무리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부상위험이 높은 훈련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선수들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계획하여 행하되 지속적으로 감독을 해야 합니다. * 보조지도자 및 보조도구 활용 등으로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표 17〉 훈련프로그램

- ✓ **(위험행동금지)** 지도자는 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위험행동 금지	- 부상을 입히거나 당할 수 있는 위험한 동작
	- 선수끼리의 다툼,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행위
	- 무리한 동작 및 운동량 등으로 인한 부상
	- 훈련기간 중 음주
	- 도핑 관련 금지약물 등 * 아래 '금지약물검색'내용 참조
	

〈표 18〉 위험행동금지

3

훈련운영

✓ (부상발생 시 대처) 훈련 상황 중 부상 발생 시에는 부상 부위, 부상의 정도 등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부상 발생 시 대처	- 경미한 경우 R. I. C. E 처치법 (Rest/Ice/Compression/Elevation)에 따른 기본 처치를 하도록 합니다.
	- 부상의 정도가 심할 경우, 훈련을 즉시 중단하고 병원 이송, 119신고 등의 조치를 합니다. * 세부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의 '위급상황발생시 대응' 내용 참조
	- 모든 선수는 부상에서 회복되기 전까지는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보장하여, 부상이 악화되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표 19〉 부상발생 시 대처

3 훈련운영

선수단 이동

TIP

선수단의 안전이동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 **(국내이동)** 선수단은 훈련장, 숙소, 식당 등 이동 시 사전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개인차량보다는 전세차량,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것을 권장합니다.

선수단 국내이동	- 이동경로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합니다.
	- 이동시설의 연락처와 지도를 항시 구비합니다.
	- 지도자, 동료 등의 비상연락처를 항시 구비합니다.
	- 개인차량보다는 전세차량,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이동하도록 합니다.
	- 개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야간보다는 주간에 이동하도록 합니다.
	- 개인차량에 동승자를 태워 이동할 경우, 가입된 차량보험이 동승자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차량은 정속, 정주행 등 안전운행을 하도록 합니다.

〈표 20〉 선수단 국내이동

✓ **(해외이동)** 해외 훈련 시 차량이동은 사전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개인차량보다는 전세차량,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보다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합니다.

선수단 해외이동	- 이동경로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합니다.
	- 해외 체류 전 숙소, 훈련장, 식당 등의 주요 이동위치를 공유하여, 사전에 이동경로를 숙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지도 등).
	- 해외 체류 전 숙소, 훈련장, 식당 등의 주요 이동위치의 연락처 및 지도자, 동료 등의 비상연락처를 항시 구비합니다.
	- 개인차량보다는 전세차량,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보다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합니다.
	- 임대차량 등의 활용 시 차량의 보험가입 여부, 차량의 연한 등을 확인하여, 보다 안전한 차량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 임대차량은 허가 받은 회사(여행업, 차량임대업)의 차량만 이용합니다.
	- 임대차량의 운전자 경력을 사전에 요구하여 차량운전 경력이 있고, 체류지역에 대한 지리적 이해가 높은 자를 배정하도록 합니다.

〈표 21〉 선수단 해외이동

4 응급의료, 화재, 치안, 위생

응급의료

TIP

훈련 중 부상, 사고 등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응급의료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 ✓ 훈련 준비 시 응급센터 운영, 환자의 이송 및 치료 등을 할 수 있는 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훈련 기간 중 부상, 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즉각적인 대응을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 (응급센터) 훈련장 내에 응급센터를 활용하거나 응급센터 등이 없는 경우, 자체 응급센터 운영 또는 응급용품 비치 등을 해야 합니다.

응급센터	- 훈련 시 최소 응급상자는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여건 상 응급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외부병원 등에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 또한, 훈련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위치는 사전에 파악하여야 합니다.

〈표 22〉 응급센터

- ✓ (구급차) 위급상황 시 병원으로 이송은 상황에 따라 지체 차량을 활용하거나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구급차	- 병원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가장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이때, 119와 연락하여 이동방법에 대한 문의 후 지시를 따르도록 합니다.

〈표 23〉 구급차

- ✓ (병원) 전문 응급처치 등을 위해 최소 2개 이상의 병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긴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 및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병원명	위치	담당자 / 연락처	이동거리(Km) 소요시간(분)	특이사항

〈표 24〉 인근병원 연락처

4 응급의료, 화재, 치안, 위생

소방 및 전기

TIP

소방 및 전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훈련 시 사고예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 (소방) 훈련장의 소방 관련 용품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설치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해 훈련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소방책임자와의 면담 및 관련 서류, 기록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소방용품) 소화설비(자동소화 장치, 소화전 등), 경비설비(누전경보기, 감지기 등), 피난 구조설비(비상조명등) 등을 포함합니다.

소방용품	- 소방용품은 적정 제품검사(KC인증마크)를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또는 제39조 제2항의 제품검사
	- 분말형태의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므로 해당 소화기는 정기점검 및 제조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 (용품비치) 소화용품(소화전, 소화기 등) 앞에 부적절한 설치물 또는 비치물이 놓여있다면 해당 설치물 및 비치물을 해체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동기능점검의 기록표	종합정밀점검의 기록표
<p>소방시설 점검기록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점검업체명 : •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사 외 명 • 점검의 구분 : 작동기능점검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p><small>'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33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표지를 붙입니다</small></p> <p>대상명 :</p>	<p>소방시설 점검기록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점검업체명 : •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사 외 명 • 점검의 구분 : 종합정밀점검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p><small>'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33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표지를 붙입니다</small></p> <p>대상명 :</p>

[점검기록표 양식7]

<표 25> 소방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5' 참조

4

응급의료, 화재, 치안, 위생


- ✓ (소방_실외) 훈련이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화재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천막 및 데스크 등을 설치할 경우 이동식 소화기를 최소 1대 비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 훈련장 내에는 인화성 물질 반입 및 무단 취사 등을 금지하도록 합니다.

- ✓ (흡연) 구역은 별도로 설치하고 화재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기 또는 방화사, 방화수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훈련 장소가 금연구역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흡연구역 설치를 금지합니다(예시 : 공원, 체육시설 등).
 * 지자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


〈표 26〉 흡연

- ✓ (인화성·폭발성·유독성 물질) 참여자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보관하고 위험물의 종류 및 위험 경고 표지를 부착합니다.

 인화성물질경고 <small>인화성물질이 저장되어 있습니다.</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물류: 폭죽, 연막탄, 화약류, 조명탄 등 - 인화성 물질: 인화성 가스(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및 인화성 액체(휘발유·페인트 등) - 기타 위험 물질: 드라이아이스 등
--	--

〈표 27〉 인화성, 폭발성, 유독물질⁹⁾

- ✓ (전기)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용품을 사용하고 안전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KC인증 마크 확인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은 소방용품과 전기용품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단자(함), 고압전기설비 등에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하며, 경고 등의 표식을 해야 합니다. - 안전을 위해 하나의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전원을 연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 때, 전선관 또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전선은 커브, 테이프 등을 통해 이동객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지붕,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선의 경우, 지붕 및 기둥 등에 단단히 고정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표 28〉 전기

8)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참조
 9) ‘야영장업 사업자 안전관리 매뉴얼(문화체육관광부, 2019)’ 참조

4 응급의료, 화재, 치안, 위생

치안

TIP

치안유지, 경비, 테러방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 (대책수립) 훈련 준비 시 치안, 경비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 치안유지는 선수단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및 대처, 통제, 보호 활동을 포함합니다.
- 훈련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위험행동 등에 대해 선수단 구성원들이 사전에 주의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 범죄(강도, 절도, 시비, 폭행 등) 등의 치안 문제, 교통사고 등
- 해외 훈련을 계획할 때에는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확인하여, 국가/지역별 정보, 해외 문제발생 시 연락처 등을 꼭 확인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사이트 : <https://www.0404.go.kr>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Home > 해외안전여행 >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PRINT

내 손안에 작은 영사관!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 "해외안전여행"을 검색하세요!

모바일 동행서비스, 위기상황별 대처 메뉴얼, 국가별 여행경보단계, 좌측우측 상황별 카툰, 공관 위치 찾기, 영사콜센터번호, 대사관&총영사관 연락처 및 현지 긴급구조 연락처 등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앱을 어떻게 설치하나요?

STEP
1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해외안전여행’을 검색~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STEP
2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해외안전여행 앱을
다운받는다.

[그림 1]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_외교부

4 응급의료, 화재, 치안, 위생

✓ (치안관련 필수사항) 치안유지, 경비, 교통 지원 대책은 필수로 세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필수사항	참여자(선수단, 관계자, 관람객) 및 대회시설과 관련된 사고, 범죄 등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치안, 교통 등의 대책을 훈련 준비 시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치안관련 사항은 경찰, 경비업체 등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되, 모든 훈련운영스텝이 동참하여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관계자는 치안, 경비, 교통 등과 관련된 사건발생 시 치안/경호/경비/교통/훈련/안전 책임자 등에게 상황이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발생 시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연락처는 조직 내·외부에 공유 및 게재해야 합니다.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치안책임자			
경호/경비책임자			
교통책임자			
안전책임자			
훈련책임자			
[치안 사건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처]			

〈표 29〉 치안유지 필수사항

✓ (테러방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하거나 시설을 관장하는 중앙부처 등을 통하여 대테러 센터에 테러예방, 현장지도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추진합니다.

테러방지	의심자의 발견·위협전화 등 테러정보가 입수되었거나 테러 발생 시 국정원(신고처 111), 경찰서(신고처 112), 소방서(신고처 119) 등 관계기관과 시설의 안전책임자 등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해야 합니다.		
	국제대회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회 등에는 테러예방대책 ¹⁰⁾ 을 수립해야 하며, 출입 및 자체 방호계획,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및 비상대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표 30〉 테러방지

10) 다중시설이용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참조

4 응급의료, 화재, 치안, 위생

위생

TIP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 식품, 질병 등에 있어서 위생관리를 해야 합니다.

✓ (식음료 등) 식중독 등 질병 등의 예방을 위해 식음료 위생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식음료 위생	- 식사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식당만 이용하도록 합니다.
	- 식품 등의 보관·운반·진열 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 식품은 식품위생법상 인가된 제품만 섭취하도록 합니다.
	-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 얼음을 물, 음료 등에 넣어서 먹는 경우, '얼음'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얻은 제품에 한해 섭취해야 합니다.
	- 식수 및 음료는 가급적 제품(밀폐된 용기로 판매되는 제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식수를 섭취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위생관리를 하는지 확인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표 31〉 식음료 위생

✓ (숙박시설 등의 위생) 장기간 훈련으로 인해 숙박을 해야 하는 경우 질병 등의 예방을 위해 숙박시설의 위생상태를 점검합니다.

숙박시설 위생	- 장기간 훈련으로 인해 숙박해야 하는 경우 공중위생법상 '숙박업허가'를 받은 곳에 한해 숙박을 해야 합니다(*숙박업허가증 확인). * 숙박업허가조건 : 소방방화시설완비, 위생교육이수 등
	- 에어컨 및 히터 등 온도조절기능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객실의 에어컨, 히터, 냉장고, 침구 등의 청결상태를 확인합니다.
	- 욕실, 변기, 세면대 등의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를 확인합니다.
	- 환기 시설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표 32〉 숙박시설 위생

4

응급의료, 화재, 치안, 위생

✓ (해외훈련 시 질병예방) 각 국가별 예방접종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접종을 하도록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KCDC 홈페이지 ⇒ 해외감염정보 ⇒ ‘국가별요구사항’
 각 국가 입국시 필요한 예방접종 정보 등을 확인하여 사전 접종을 맞도록 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cdc.go.kr/menu.es?mid=a20102040000>

〈주요 감염병 예시〉

-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 : 황열,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등
- 오염된 물과 음식에 의한 감염병 : 장염, A형 간염, 장티푸스, 콜레라 등
- 기타 : 인플루엔자, 파상풍, 광견병 등

〈표 33〉 해외훈련 시 질병예방

5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응급처치매뉴얼_스포츠안전재단 참조)

TIP

응급상황 발생 시 상황인지, 119신고, 처치 및 도움 순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은 ①상황인지, ②119신고, ③처치 및 도움으로 크게 3단계로 구분됩니다 (*3C : Check, Call, Care).
- ✓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제공하는 ‘위급상황에서의 행동절차, 3C’은 아래와 같은 주요 상황들에 대한 응급처치 증상 및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단계 상황인지 : 청각적, 시각적, 후각적 징후와 더불어 환자의 증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119 등 신고 : 119 또는 훈련담당자 등에 전화를 해서 장소, 환자상태 등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 처치 및 도움 : 119 등 신고 후에는 환자를 안심시키고, 기본적인 응급구조 행동을 하도록 합니다. (단 처치에 대한 방법 등을 모르는 경우 주위 안전요원이 시행하도록 합니다.)
	- 세부 내용은 스포츠안전재단의 ‘위급상황에서의 행동절차, 3C’를 참고바랍니다.

〈표 34〉 ‘위급상황에서의 행동절차, 3C’_스포츠안전재단

5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

✓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제공하는 ‘응급처치매뉴얼’은 아래와 같은 주요 상황들에 대한 응급처치 증상 및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정지(심폐소생술) - 골절 : 빗장뼈(쇄골), 팔꿈치뼈(주관절), 무릎뼈(슬개골), 정강이뼈(하퇴), 발목, 발등, 갈비뼈, 척추 - 염좌 : 염좌 및 좌상 - 드레싱과 삼각건 사용법 - 피부 상처 : 지혈, 감염, 기타 - 고온·저온에 의한 부상 - 중독 - 갑작스러운 질병 : 뇌졸중, 당뇨병, 천식, 실신, 발작
---	---

〈표 35〉 응급처치매뉴얼_스포츠안전재단

✓ 소방청에서 제공하는 ‘국민행동요령 응급처치’는 아래와 같은 기타 상황들에 대한 응급처치 증상 및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상 - 열사병 - 기도폐쇄 - 벌에게 쏘였을 때 - 뱀에게 물렸을 때 - 개에게 물렸을 때 - 약물(독극물)중독 - 식도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 과 호흡 증후군 - 갑작스러운 질병 : 뇌졸중, 당뇨병, 천식, 실신, 발작
---	--

〈표 36〉 국민행동요령 응급처치_소방청

5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

- ✓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제공하는 ‘풍수해·지진대응매뉴얼’은 아래와 같은 주요 상황들에 대한 단계별 행동요령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 지진 발생 시 단계별 행동요령</p>
	<p>- 풍수해 발생 시 단계별 행동요령</p>
	<p>- 대설 발생 시 단계별 행동요령</p>
	<p>- 한파특보 발령 시 단계별 행동요령</p>

〈표 37〉 풍수해·지진대응매뉴얼_스포츠안전재단

5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

지진, 풍수해, 대설, 한파 발생 시 행동요령¹¹⁾

TIP

초동대처 ⇨ 피해신고 ⇨ 안내 ⇨ 대피유도 순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 (지진 등 행동요령) 초동대처 ⇨ 지진피해신고 ⇨ 안내 ⇨ 대피유도 순으로 행동하도록 합니다.

* 세부 내용은 스포츠안전재단의 '풍수해·지진대응매뉴얼'을 참고바랍니다.

단계별 구분	단계별 행동요령
초동대처	-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거나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
	-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전기를 차단
	- 승강기는 이용을 금하고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
	- 화재가 났을 경우, 신속하게 불을 진화 (크게 흔들리기 전, 큰 흔들림이 멈춘 후, 발화된 직후 화재 규모가 작을 때 등 3번의 기회가 있음)
지진피해신고	- 119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신고하고 상황을 전파
	- 화재의 경우 침착하게 화재 위치를 알림
	- 가능하다면 세부 화재 내용과 인명피해가 있는지 알려줌
안내	- 안내방송, 전광판 자막 및 안전요원을 활용하여 안내
	- 지진이 멈춘 후 안내방송을 실시
	- 대피행동요령, 사고상황, 이동경로, 대피처 도착 후 행동요령과 같은 핵심내용은 반복적으로 안내
대피유도	- 지진 발생 시 유리창, 간판 등이 떨어져 위험하므로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도록 안내
	- 참여자 모두 당황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대피 안내
	- 이용자가 일시에 출구로 집중되지 않도록 침착한 상황 설명과 대피 안내를 실시
	- 대피에 필요한 물품(수건 등)이나 휴대품을 소지하도록 안내

〈표 38〉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스포츠안전재단)

11) 풍수해·지진대응매뉴얼, 스포츠안전재단 참조

5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

- ✓ 규모 4.0이상의 지진 발생 시 훈련 중지 및 취소를 적극 권장합니다.

발표 내용	규모 4.0 이상의 지진 발생 시
훈련 전	회의소집 ⇨ 훈련 시행검토 ⇨ 훈련의 연기/취소 또는 지진으로 인한 경기장 피해 구역 조치
대회당일	긴급회의소집 ⇨ 훈련중지(적극 권장) ⇨ 취소(적극 권장)
결정권자	행사주최/주관 단체의 장, 지도자 등

〈표 39〉 지진 발생 시 권장사항

- ✓ 태풍 발생 시 단계별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실행합니다.

* 세부 내용은 스포츠안전재단의 ‘풍수해·지진대응매뉴얼’을 참고바랍니다.

태풍 발생 시 행동요령	- 태풍 등의 경로가 경기장 인근을 통과하는 경우 훈련은 중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선수단의 안전을 확인하고, 침수된 도로 및 교량 등에는 출입을 통제합니다.
	- 태풍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떨어지도록 합니다.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시설물의 접촉을 금지시킵니다.
	- 전도, 감전 등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이동이 제한될 경우, 119 신고 후 지시사항에 따라 행동하도록 합니다.

〈표 40〉 태풍 발생 시 행동요령

- ✓ 대설 발생 시 단계별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실행합니다.

* 세부 내용은 스포츠안전재단의 ‘풍수해·지진대응매뉴얼’을 참고바랍니다.

대설 발생 시 행동요령	- 대설특보 발령이 확인되면 훈련을 중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선수단을 실내로 이동시키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온용품을 제공합니다.
	- 저체온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선수단이 있는지 확인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구급차를 활용하여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표 41〉 대설 발생 시 행동요령

- ✓ 한파특보 발령 시 단계별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실행합니다.

* 세부 내용은 스포츠안전재단의 ‘풍수해·지진대응매뉴얼’을 참고바랍니다.

한파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 한파특보는 ‘최저기온 -12℃(주의보) 혹은 -15℃(경보)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발령됩니다.
	- 한파특보 발령 시 야외훈련은 중단할 것을 권장하며, 선수단의 안전을 확인하고 실외 이동을 제한합니다.
	- 한랭 질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선수단이 있는지 확인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표 42〉 한파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6

안전고지 및 통제

안전고지

TIP

훈련 시, 모든 참여자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 ✓ 훈련 전/훈련 중,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알림(자료배부, 안내표식, 방송 등)을 하도록 합니다.

훈련 전/훈련 중 안전고지	- 훈련 전 : 위험, 안전준수, 규정준수, 참가동의 등
	- 훈련 중 : 장소, 시설, 장비, 이동 등에 대한 주의, 위험, 제한 등

〈표 43〉 안전고지

- ✓ 훈련 기간에는 모든 장소, 시설, 장비, 훈련 등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 및 안전 행동을 위한 사항 등을 공지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지사항	- 이동 관련 : 훈련장, 숙소, 식당 등 이동 시 도보 및 차량 이동 안전에 관한 사항
	- 훈련 관련 : 부상 방지를 위한 준비/정리 운동, 본 운동 시 부상 발생이 가능한 행위 등의 제한
	- 위험 관련 : 주의, 접근금지 등의 표식이 부착된 시설, 장소 등에 대한 접근 및 접촉 금지
	- 기타 : 금주, 도핑 약물 금지, 위험한 일상행동 등에 대한 사항 등

〈표 44〉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지사항

- ✓ 위급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배치도, 대피소·대피로 및 소화기, 구급상자, 위치도, 비상 연락망, 이용방법, 안전수칙 등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림 2] 핸드볼 경기장 내 안전장비(예시)_자료제공: 스포츠안전재단

6

안전고지 및 통제

안전 동의

TIP

선수단의 스포츠안전동의서 및 응급처치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스포츠 활동에 앞서 스스로 스포츠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는 ‘안전동의서’ 작성을 통해 선수단의 책임감과 안전의식을 고취합니다.

구분	주요 동의내역	비고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	별도양식
건강상태	질병/질환, 약물복용, 알러지 증상 등	별도양식
일반동의	훈련/안전 관련 규정 숙지, 안전고지 내용 숙지, 훈련 주최/주관 측의 지시 및 통제에 따름,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불응 시 퇴장/퇴소	별도양식

〈표 45〉 참여자의 주요 동의내역

스포츠안전동의서(예시)

* 자세한 동의서 내용은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안전동의서’를 참고바랍니다.

- 본인은 (핸드볼)이 격렬한 신체적 활동(신체적 활동이 구체적인 모습_ 많이 움직이거나, 신체 접촉이 있으며 등) 수반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 본인은 (핸드볼)에 참가하는 것이 부상의 위험을 포함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부주의와 상관없이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발생 가능한 부상은 다음과 같으며 제시하지 않은 기타 부상도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

이에 본인은 자발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을 인정한다.

20** 년 월 일 (서명)

〈표 46〉 스포츠안전동의서_스포츠안전재단

6

안전고지 및 통제

- ✓ 이때 활용내역, 기간, 목적을 명시하여 참여자가 이해하기 쉽게 해야합니다. 또한, 모든 동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훈련 참가신청 시 또는 훈련 현장에서 확인하고 동의(사인)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활용기간	훈련 종료 후 즉시 파기(권장)하나 사진 등은 지속 가능	현장 동의 및 서명
활용목적	훈련용(건강상태확인, 비상시연락 등), 사진 등은 비영리목적, 홍보용	현장 동의 및 서명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현장 동의 및 서명

〈표 47〉 안전동의 활용목적 및 기간 등

- ✓ 훈련참가 등록을 할 때, 응급처치와 후송방법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응급처치동의서를 통해 선수단은 응급처치 단계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동의서(예시)

* 자세한 동의서 내용은 스포츠안전재단의 ‘응급처치동의서’를 참고바랍니다.

- 본인은 스포츠 활동 중 부상이 발생하였거나, 신체적인 손상 혹은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지체함으로써 손실을 초래할 만한 상황일 경우, 유능하고 자격을 갖춘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본인은 (스포츠 종목 또는 프로그램명)에 참가하여 부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송수단)으로 수송되는 것에 동의한다.

20** 년 월 일 (서명)

참여자 성명

법적 보호자 성명

(19세 미만 참여자의 경우)

〈표 48〉 응급처치동의서_스포츠안전재단

6

안전고지 및 통제

통제

TIP

상황에 따른 적절한 통제를 통해 선수단의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 ✓ 훈련 기간 중 선수단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통제에 따르도록 안내를 하고 지도자는 사고예방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통제를 해야 합니다.

통제활동	- 훈련 중 위험 행동
	- 무리한 훈련
	- 비위생적인 식음료 등의 섭취
	- 훈련 및 숙소 등의 무단이탈
	- 통제구역 등 출입
	- 훈련 기간 중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행동

〈표 49〉 훈련참가 선수단 통제사항

1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의 이해

- ✓ **(개념)**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재단의 목적에 따라 국민의 스포츠 활동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는 서비스입니다.
- ✓ **(의무가입)** 스포츠 참여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관련법에 의거 체육 분야의 보험가입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진흥법〉

- 법 제12조(보험 등 가입) [시행 2015. 6. 28.]

- 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생활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5조(보험가입 등) [시행 2016. 3. 28.]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지부와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역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생활체육대회: 해당 대회에 등록된 사람의 수와 대회참여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2. 생활체육 강습: 해당 강습에 등록된 사람의 수와 강습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법 제26조(보험 등 가입) [시행 2008. 2. 29.]

-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스포츠안전재단)** 체육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다년간 운영해오고 있으며, 변화하는 스포츠 환경 및 고객의 니즈(needs)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

스포츠안전공제 상품의 분류

✓ (대상) 운영자(주최자), 참여자 등을 위한 상품을 제공합니다.

구분	배상책임형 공제	개인용 공제
상품설명	운영자(주최자)의 책임 및 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	참여자의 신체 및 재물의 손해에 대한 보상
보장내용	운영자의 운영관리상 책임이 있는 사고에 대해 운영자의 법률적 배상책임 보상	주최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자 개인이 입은 상해사망사고에 대해 보상 (상품에 따라 배상책임사고 포함)
특이사항	상품에 따라 특약담보 추가로 참여자 개인 과실로 인한 상해사망사고의 치료비 보상 가능	운영자가 가입한 상품과는 별개로 중복 보상 가능
재단상품	주최자배상책임공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공제, 재산종합공제, 수중형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공제	1년형, 단기형, 참여자안심ALL, 강습회, 워크숍, 학교박, 스포츠여행자공제, 전문체육인상해공제

✓ (대상) 체육행사(생활, 전문)의 운영자와 참여자를 위한 장·단기 상품을 제공합니다.

구분	참여유형	참여기간	상품
생활체육	참여자	장기	1년형
		단기	단기형/참여자안심ALL
	운영자	장기	강습회 / 학교박 / 주최자배상책임공제
		단기	워크숍 / 강습회 / 학교박 / 주최자배상책임공제
전문체육	참여자	장기	전문체육인상해공제
		단기	참여자안심ALL
	운영자	장기	주최자배상책임공제
		단기	주최자배상책임공제

※ 강습회, 학교박, 워크숍 등도 배상책임의 성격으로 가입하려면 주최자배상책임공제로 대체 가능

※ 스포츠활동이 없는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도 주최자배상책임공제 가입 가능

※ 전문체육선수의 훈련도 주최자배상책임공제로 가입 가능

*관련문의 : 스포츠안전재단 고객센터 1899-0547

2

표준안전계획서

안전계획서 작성 표준안

『즐겁고·안전한 스포츠행사!』

2020 ○○○○ (행사명)

안전계획서

2020. 00.

이 표준안은 안전한 스포츠 경기와 훈련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재)스포츠안전재단이 제공하는 기본 양식입니다. 대회 및 훈련(경기) 조직,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시행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연맹)

2

표준안전계획서

1 대회/훈련 개요

- 행사명 :
- 일시 :
- 장소 :
- 참석인원 : 총 명(선수 00명 / 관람객 00 명 / 관계자 00명)
- 주요 대상(※ 주요대상의 연령별, 성별 해당란에 ‘○’ 각각 표기)

구분	연령별						성별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어르신	남	여	혼성
비장애인									
장애인									

- 행사성격 : (대회 / 훈련) (전문체육 / 생활체육)

- 행사내용

-
-
-
-

- 주요 참석자

-
-
-

2 주최자 인적사항

- 단체명 :
- 주소 :
- 연락처 : (유선)
- 안전관리책임자 연락처 : (유선) (휴대전화)

2

표준안전계획서

3 안전계획 및 목표설정

안전계획

TIP

대회/훈련 시 모든 참여자(운영자, 선수단, 관람객 등)가 안전한 환경에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계획을 행사/훈련 계획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목표 설정

TIP

과거 동일 행사의 사고건수 및 부상자수를 고려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000년도 00월		0000년 00월		비고		
사고00건 / 부상자00명		사고00건 / 부상자00명		사고00건 / 부상자00명 감소		
최근 3년간 사고현황	0000년		0000년		0000년	
	사고건수	부상자수	사고건수	부상자수	사고건수	부상자수
	00	00	00	00	00	00
참여자규모	000,000명		000,000명		000,000명	

*사고 : 통원치료를 하는 수준의 사고에 한함.

안전을 위한 조직체계

TIP

(내부 조직체계) 안전관련 내부 조직체계를 구성합니다.
 (외부 조직체계) 대회운영본부 외 경찰서, 소방서, 병원, 시군구청의 외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조직체계 공유) 조직체계 구성이 완료되면 담당자 및 관련기관의 연락처를 작성하고 조직 내·외부에 공유하도록 합니다.

위기관리계획

TIP

대회/훈련 기간 중 빈번히 발생하거나 발생가능 한 위기를 예측,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등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분	사고 정도	사고 장소 및 세부내용	대처방안
주요 사고 현황			

2

표준안전계획서

□ 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등

TIP

대회/훈련 안전점검은 자체점검 뿐만 아니라 스포츠안전재단 등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철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획대로 대회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는 계획 및 운영에 반영되어 조치 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문서 기록 및 관리

TIP

안전과 관련된 안전방침, 회의록 등의 문서는 반드시 기록물로 작성하여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관련 문서는 규정(재/개정포함), 지침, 계획, 승인 문서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개요, 사고경위,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안전인력 [대회 운영자에 한함]

□ 안전인력 구성

TIP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요원으로 구성하여 조직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전관련 사항은 안전인력체계에 의해 관리(지시, 보고, 통제) 되도록 하고 주차, 안내 등의 운영인력은 사고 예방활동 및 사고 발생 시 안전인력에게 연락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 안전인력 선발 및 교육

TIP

안전인력은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안전의식 함양 및 대처능력 배양 등을 위한 최소 1회 이상의 교육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구분	필수역량	직급 등
안전관리 책임자	대회 안전 총괄 기획 및 관리 능력, 리더십 내외부 조직과 소통능력, 대회운영 노하우, 인력관리	협회 임원, 고위직
안전 관리자	안전계획 수립, 실행, 평가, 피드백 등 실행, 관리 능력 안전요원의 선발, 교육, 관리, 대회운영 노하우 사고발생시 조치, 사후관리, 공제처리, 안전 프로그램 구성 관계자/협력 기관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	관리직 수준
안전요원	대회 참여자 관찰 및 관리 위기상황발생시 초동대응/대처법 관리자 보고 및 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 • 스포츠안전재단, 대한안전연합,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하는 스포츠안전관리사, 응급처치, 인명구조요원 및 응급구조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자	일반직, 고용직

2

표준안전계획서

□ 안전인력 배치 및 활용

TIP

참여자(선수단, 관계자, 관람객) 500명을 기준으로 안전인력을 대회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배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안전요원은 대회장소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정된 공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제발생 시 즉각 대응 및 연락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실내 대회	구 분	1000명 이상	500~ 1000명	500명미만
	안전관리책임자	2명	1명	1명
	안전관리자	2명	2명	1명
	안전요원	8-10명	6-8명	5-6명
실외 대회 (경기장)	구 분	1000명 이상	500~ 1000명	500명미만
	안전관리책임자	2명	1명	1명
	안전관리자	2명	2명	1명
	안전요원	10-12명	9-10명	8-9명
실외 대회 (야외형, 경기장외)	구 분	1000명 이상	500~ 1000명	500명미만
	안전관리책임자	2명	2명	1명
	안전관리자	5명	4명	3명
	안전요원	13-15명	11-13명	10-11명

5 대회/훈련 장소

□ 대회/훈련 장소의 적정성

TIP

행사에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회와 훈련을 구분하여 적합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수용인원) 좌석과 입석의 합계(관람객, 선수단, 운영진 등)를 말하며,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수용인원규모를 산정합니다(**대회 운영자에 한함**).

규정 구분	산정방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

(대회/훈련 장소) 경기장의 상태가 대회/훈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지리적위치) 경기장 접근성, 소방서, 병원 등 협력기관과의 접근성 등
 (편의시설) 차량이동 및 주차, 보행자 이동통로, 참여자를 위한 비상구, 화장실 등
 (안전/위생 등) 경기장 내 수도(식수포함), 소방, 전기, 가스 관련 안전성 등

2

표준안전계획서

□ 대회/훈련용 시설 및 장비

TIP

시설 및 장비는 '종목별 대회/훈련 규칙서(규정) 등'을 준수하여 구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 부대시설 및 장치(대회 운영자에 한함)

TIP

운영본부, 주차장, 관중석, 무대 등의 부대시설 및 장치 등을 적정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점검하고 운영합니다.

6 대회/훈련 운영

□ 선수단의 안전점검

TIP

선수단은 자체점검을 통해 부상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분	세부사항
건강상태	근육, 관절, 심장 및 호흡기 등의 이상 유무, 부상부위 등의 확인
장비착용	보호대, 슬리브, 마우스가드 등 종목에서 정한 장비 일체
사고예방 및 대처	안전한 경기/훈련 활동 및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방안 확인

□ 심판/경기감독관 등의 안전점검(*훈련 시에는 훈련 책임자, 지도자 등)

TIP

경기감독관/지도자 등은 각종 재난(천재지변, 미세먼지, 오존 등) 상황부터 경기장 내부의 위험요소를 확인 또는 점검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실외 경기/훈련 시 미세먼지 농도 및 지속시간에 따른 대응 조치를 해야 합니다(단, 실내경기/훈련 시에도 선수/관중 이동, 야외 이벤트/훈련 유무 등을 고려하여 대응할 것을 권장합니다).

(폭염) 실내활동의 경우 적정온도 유지가 가능하나 실외 활동의 경우 폭염을 고려하여 경기/훈련 개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오존) 실외활동은 오존 농도를 고려하여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경기장) 선수단의 보호를 위해 경기장 상태(바닥, 골대, 골망, 보호대 등)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해야 하며, 문제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장비점검) 경기/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장비를 점검해야 합니다.

(위험행위) 경기/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해야 하며, 난폭한 행위 발생 시 규정에 경기 중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부상대처) 경기/훈련 중 부상 발생 시 규정 등에 의거 경기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중대처) 관중의 난입, 관중석으로 부터의 투척물 등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표준안전계획서

□ 대회/훈련 운영의 안전점검

TIP

모든 관계자는 대회/훈련 장소 및 관람객 등을 위한 안전 점검 및 관리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점검/관리) 대회관련 모든 인력(본부인력, 안전인력, 운영인력)은 대회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람객점검) 주차에서부터 관람, 퇴장까지 관람객의 안전 보장 및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관람객을 위한 안내, 점검, 행동 등의 관람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7 응급의료, 화재, 치안, 위생

□ 응급의료

TIP

대회/훈련 기간 중 부상, 사고 등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응급의료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응급센터 및 용품) 응급처치를 위한 응급센터 및 응급용품을 제공합니다.
 (응급대원 및 구급차) 행사 규모에 따라 최소 의료인력과 구급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병원) 위급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최소 2개 이상의 병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협력병원 연락처 예시〉

병원명	위치	담당자 / 연락처	이동거리(Km) 소요시간(분)	특이사항

□ 소방 및 전기

TIP

소방 및 전기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대회/훈련 사고예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소방) 대회/훈련 장소의 소방관련 용품 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히 설치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해 대회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소방책임자와의 면담 및 관련 서류, 기록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용품을 사용하고 안전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 치안

TIP

치안유지, 경비, 테러방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필수) 치안유지, 경비, 교통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테러방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하거나 시설을 관장하는 중앙부처 등을 통하여 대테러 센터에 테러예방, 현장지도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추진합니다.

2

표준안전계획서

□ 위생

TIP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 식품, 질병 등에 있어서 위생관리를 해야 합니다.
 (시설물 위생) 모든 시설물은 참여자 모두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식음료 등) 식품위생법상 인가된 제품 및 위생상 안전한 식음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숙박시설) ‘숙박업허가’를 받은 곳 중 위생상태를 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질병) 필요한 경우, 질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8 위급상황발생시 대응

□ 일반 요령

TIP

위급상황 발생 시 초동 조치, 응급구호조치, 지원요청 순으로 대응합니다.
 * 스포츠안전재단에서 발행한 ‘스포츠안전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TIP

응급상황 발생 시 상황인지, 119신고, 처치 및 도움 순으로 대응합니다.
 * 스포츠안전재단에서 발행한 ‘응급처치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TIP

초동대처 ⇨ 지진피해신고 ⇨ 안내 ⇨ 대피유도 순으로 행동하도록 합니다.
 * 스포츠안전재단에서 발행한 ‘풍수해·지진대응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풍수해, 대설, 한파 발생 시 행동요령

TIP

각 재난 상황에 따라 경기/훈련의 연기 등을 확인하여 대응합니다.
 * 스포츠안전재단에서 발행한 ‘풍수해·지진대응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고지 및 통제

□ 안전고지

TIP

대회 및 훈련 전 또는 기간 중 참여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고지를 해야 합니다
 (시설 배치도, 대피소·대피로 및 소화기, 구급장소, 위치도, 비상 연락망 등)

□ 안전 동의

TIP

참여자 안전과 관련된 사안 행사 개최 전 또는 행사일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여자의 동의사항(안)>

구분	동의내용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
건강상태	질병/질환, 약물복용, 알러지 증상 등
일반동의	경기/안전 관련 규정 숙지, 안전고지 내용 숙지, 지시 및 통제에 따름, 안전관련 행동 등 불응시 퇴장 가능, 사진, 영상 등 촬영/활용 가능

2

표준안전계획서

통제

TIP

대회 및 훈련 장소에서 참여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통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10 보험 등 가입여부

상해 등의 대비를 위한 (주최자)보험 가입 확인

가입여부	가입기관	보험명칭	보장일반	보장범위		
				사망	사고	장애 등
<input type="checkbox"/> 가입 <input type="checkbox"/> 비가입			기간/ 대상			

* 기타 보험관련 보장내용 등 필요사항 명시

11 추진일정

안전관리 계획 추진일정(표) 예시

추진내용	월별실적(누계)	목표 (00회)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안전계획 수립 및 목표설정														
안전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														
위기관리계획 수립														
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안전인력 구성														
안전인력 선발 및 교육														
안전인력 배치 및 활용														
대회/훈련 장소의 선정														
대회/훈련용 시설 및 장비 확보/운영														
부대시설및장차(대회용)														
선수단의 안전점검														
심판/경기감독관 등의 안전점검														
대회/훈련 운영의 안전점검														
응급의료서비스														
소방 및 전기 점검														
행사 치안 및 위생 관리														
위급상황발생시 대응														
안전고지 및 통제														
주최자 보험 등 가입														

2 표준안전계획서

핸드볼 안전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지도자용)

※ 점검 결과(안전 O , 요주의 △ , 불안전 X , 해당없음 中 택1)

구성	체크리스트	점검결과
안전계획수립	훈련 계획수립 시,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 목표를 설정' 하고 있는가?	
	안전계획 수립 시, 내/외부 안전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서로 공유하고 있는가?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및 대응이 가능한가?	
	훈련 안전점검 및 현장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가?	
훈련장소	훈련장소는 안전성, 수용인원, 경기장,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는가?	
훈련운영	훈련 시, 선수단은 자체점검을 통해 부상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가?	
	훈련프로그램은 안전사고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성 및 진행 하고 있는가?	
	선수단의 안전이동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응급의료	훈련 중 부상, 사고 등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소방 및 전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훈련 시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는가?	
화재/치안/위생	치안유지, 경비, 테러방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 식품, 질병 등에 있어서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가?	
위급상황대응	응급상황 발생 시 상황인지, 119신고, 처치 및 도움 순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초동대처 ⇨ 피해신고 ⇨ 안내 ⇨ 대피유도 순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안전고지/통제	훈련 시, 모든 참여자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고지하고 있는가?	
	선수단의 스포츠안전 동의서 및 응급처치동의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상황에 따른 적절한 통제를 통해 선수단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는가?	

